



## 코로나19 감염병 대응 등교수업 출결 운영 안내

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항상 학교 교육에 많은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코로나19 감염병에 대응하여 안정적인 학사 운영을 위한 출결 운영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2023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에 따라 출결 처리하되, 코로나19로 인한 출결 처리는 아래의 지침에 따라 운영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등교중지학생

「학교보건법」 제8조, 「학교보건법시행령」 제22조 및 ‘유·초·중등 및 특수학교 코로나19 감염예방 관리 안내’에 따라 출석하지 못한 경우, **출석인정결석 처리**

※ 확진자 발생 등에 따른 시설이용 제한 조치로 일과 중 등교중지 되는 경우, 해당일은 **‘출석인정 조퇴’** 처리

#### 【등교중지학생 출결 증빙 자료】

유형	등교중지 기간	출석인정을 위한 증빙자료의 종류 (문서, 문자메시지, SNS, 이메일, 사진 등 포함)
확진자	[등교중지] 격리 해제 시까지 (일반적으로 7일)	· 입원·격리 통지서 · PCR 양성 결과 통보 문자메시지 · 지정의료기관의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양성 확인서(소견서)
유증상자	[등교중지] 결과 확인 시까지 또는 의료기관 판단 기간까지	· 지정의료기관의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음성 확인서(소견서) · 개인용 신속항원검사 결과(음성) 보호자 확인서 ※ 부득이한 사정으로 진단검사가 불가능한 경우 병원진료 결과*를 확인하여 출석인정 처리 가능 * 의사의 진단서·소견서 제출을 우선하되, 의심증상·치료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진료확인서·처방전(치료기간)도 가능
PCR 검사자 (예: 개인용 신속항원검사 양성, 실거주 동거인 확진자, 확진자의 같은 반의 고위험 기저질환자 등)	[등교중지 권고] 결과 확인 시까지	· PCR 음성확인서 · 지정의료기관의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음성 확인서(소견서)

### ▣ 고위험군 학생

의사의 진단서(소견서)를 통해 인정된 ①기저질환 및 ②장애를 가진 학생의 경우 ③ 출석 인정결석 처리

## << 고위험군 관련 참고사항 >>

- ① 폐질환, 만성심혈관질환, 당뇨, 신장질환, 만성간질환, 악성종양, 면역저하자 등
- ② 보건복지부의 '장애복지카드' 소지자에 한하며, 장애복지카드를 증빙서류로 갈음할 수 있음
- ③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가 "심각, 경계" 단계이며 학교장의 사전 허가를 받아 결석한 경우
- ※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가 '관심, 주의' 단계이며 학부모(보호자)가 학교에 사전 연락(전화 또는 문자 등)한 경우 질병결석 처리임
- ※ 결석한 날부터 5일 이내(지역여건 등에 따라 의료기관 방문이 어려운 경우 학교장이 허가한 기간 내)에 고위험군(기저질환 및 민감군)임을 확인하는 의사의 진단서(소견서)를 제출해야 하며, 매 학기 초 제출한 진단서(소견서)로 해당학기 증빙을 갈음할 수 있음
- ※ 등교하지 않는 고위험군 학생에 대한 대체학습 제공 방법 등은 학교장이 결정

### ■ 코로나19 백신 접종

접종일 및 이상반응 발생 시 접종 후 **1~2일은 출석인정결석**(증빙서류: 예방접종내역확인서 또는 예방접종증명서), **3일 이상 지속 시 질병결석**(증빙서류: 의사의 진단서(소견서), 처방전 등) 처리

- \* 접종 후 1~2일은 휴업일을 포함하여 산정함.  
예) 접종일이 금요일인 경우, 접종 후 1일은 토요일을 의미
- ※ 백신 접종을 예약하였으나, 부득이한 사유로 접종을 하지 못한 경우는 해당 사유를 증빙하여 그에 따라 결석처리(단순 변심으로 접종하지 못한 경우 미인정결석)

### << 코로나19 백신접종에 따른 출결처리 및 증빙자료>>

	접종일	접종 후 1~2일	접종 후 3일~
<b>출결</b>	출석인정에 따른 출결처리(결석, 지각, 조퇴, 결과)		질병으로 인한 출결처리(결석, 지각, 조퇴, 결과)
<b>증빙자료</b>	예방접종내역확인서 또는 예방접종증명서	의사 진단서(소견서), 처방전 등	
① 휴업일을 기간에 포함하여 산정함. 예) 접종일이 금요일인 경우, 접종 후 1일은 토요일임 ② 백신 접종을 예약하였으나 부득이한 사유로 접종을 못한 경우, 해당 사유를 증빙하여 그에 따라 결석처리하며, 단순 변심으로 접종하지 않은 경우 미인정결석 처리함 ③ 가급적 평가 기간에 예방접종을 시행하지 않도록 하고, 부득이 접종 시 초등은 수업과정에서의 상시 평가 등을 활용할 수 있음			

- 등교 및 원격수업에 모두 해당되며, 원격수업(학급단위 이상인 경우만 인정)은 학생이 희망하여 기간 내 수강하는 경우 출석 처리 가능

### ■ 가정학습(출석 인정)

- ▶ 연 15일 이내 신청 가능(교외체험학습 포함)
- ※ **감염병(심각, 경계)일 경우에만 가정학습을 인정한다.**
- ※ 사전신청서(가정학습 계획서)를 담임선생님께 제출하여 주시고, 사후 결과보고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3. 3. 1.

## 황등남초등학교장